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085-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nternet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Contents

제1장 추진 배경 01

추진 배경 _ 01

제2장 자살유발정보의 정의 및 법령 02

1. 자살유발·유해정보의 정의 _ 02
2.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관련 법령 _ 02
3.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관련 법령 _ 03

제3장 자살유발·유해정보 사례 및 대응 방안 04

1. 자살유발정보 사례 및 대응 방안 _ 04
2. 자살유해정보 사례 및 대응 방안 _ 07

제4장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09

1. 자살유발정보 대응 단계 및 방법 체계도 _ 09
2. (1단계) 모니터링 _ 10
3. (2-1단계) 심의·차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_ 13
(2-2단계) 긴급구조 - 경찰·소방 _ 15
4. (3단계) 사법처리 - 경찰 _ 17

제5장 부록 18

1. 자살예방 관련 법령 _ 18
2. 관계부처 법령(관련 조문 발췌) _ 29
3. 유관기관 안내 _ 38

제1장

추진 배경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 자살예방법 개정('19.1)*에 따라 마련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 매뉴얼(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합동, 2019)」**현행화 필요**
 - * (주요 개정내용) 자살유발정보 정의 신설,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긴급구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 청소년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에서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제2장

자살유발정보의 정의 및 법령

1 자살유발·유해정보의 정의

구분	자살유발정보	자살유해정보
법적 근거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3호, 법적 처벌대상	법적 근거 없으나, 계도 및 유폐확산 방지의 대상
정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자살에 대한 희화화 및 생명을 경시하는 정보를 담아 생명존중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내용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써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해 관련 정보 • 단순 우울 호소 및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 정의

「자살예방법」 제2조의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2조

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조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2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관련 법령

○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

「자살예방법」 제19조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

「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관련 법령

○ 긴급구조대상자의 정의

「자살예방법」 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자살예방법」 제19조의3

-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단, 즉각적인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과 신체에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 통보한다(제19조의3제5항).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9조의3제6항).
- 긴급구조기관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개인 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9조의3제7항).
- 긴급구조기관은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9조의3제8항).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요청에 따른다 (제19조의3제9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자살예방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협조 해야한다 (제19조의3제4항).
-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단, 즉각적인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과 신체에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 통보한다(제19조의3제5항).
-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9조의4제1항).

제3장

자살유발·유해정보 사례 및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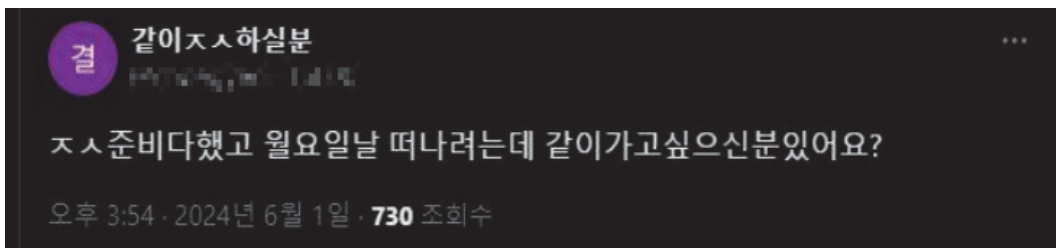
1 자살유발정보 사례 및 대응 방안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정의)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가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정보
 - (게시내용) 동반자살 희망자를 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자살방법, 장소, 연락처 등이 함께 명시
 - (특징) 대부분 SNS를 통해 게시되며, 동반자살 희망자를 모집하면 개인메신저를 통해 2차적으로 구체적 내용이 공유
- (대응방법) 긴급구조가 최우선, 처벌 여부는 구조 이후 수사를 통해 판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글 검토하여 삭제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요구 사례 >

자살을 목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동반자살자를 모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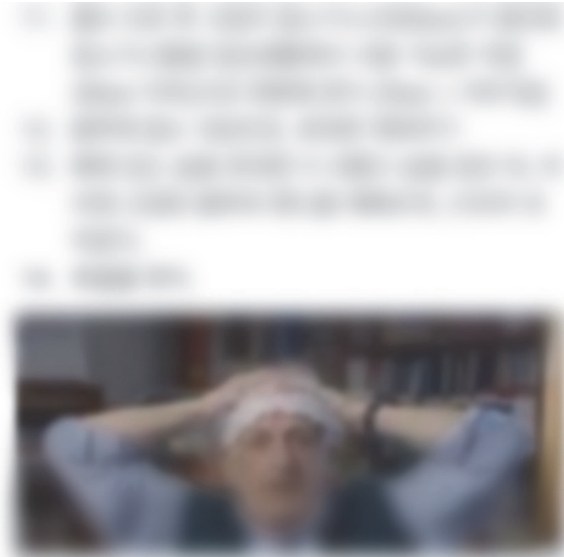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정의) 자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
 - (게시내용) 자살방법뿐만 아니라 자살위해물건의 사용 방법 및 장단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게시
 - (특징) ‘쉽게 가는 법’, ‘편안한 죽음’ 등으로 검색되며, 매우 상세한 정보 포함
- (대응방법) 상습적으로 사이트를 개설·유통하는 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 해외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로 접속차단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요구 사례 >

자살 수단과 단계별 방법을 텍스트와 그림 등 구체적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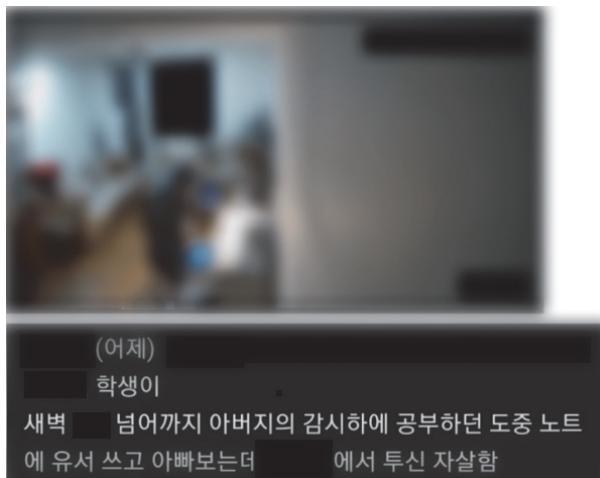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 (정의) 자살을 찬양·권유하거나, 자살시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
 - (특징) 게시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다수며, 댓글 및 DM을 통해 동반자살 모집으로 연결
- (대응방법) 긴급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구조 후 판단 필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요구 사례 >

자살을 실행하는 내용에 대한 동영상, 문서, 사진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정의)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2조

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2.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 (특징) 수면제(스틸녹스, 졸피뎀), 진정제 등을 ‘자살약’으로 칭하며 판매, 아질산나트륨 등 신종자살 수단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 (대응방법) 게시글은 신속한 삭제·차단 필요, 자살위해물건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자는 법적 처벌 대상, 구매한 자는 긴급구조 대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요구 사례 >

자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판매·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약물안락사 주사   구하는법 약물안락사 주사 구합니다 판매 약물안락사 주사 판매   합니다 약물안락사 주사 파는곳 비용 약물안락사 주사 구입 방법 약물안락사 주사 구매 방법   동물 안락사 약물 구입 사람 동물 안락사 주사 비용 강력 수면제 처방 받는법   처방전 없이 수면제 구매대행 구입방법 수면제 구매방법   종류 수면제 얻는법 추천 수면제 사망 치사량 수면제 구입 합니다 수면제 약국 구매 사이트 수면제 가격 환각 졸피뎀 치사량   후기 졸피뎀 처방 직거래 10mg 효과 구입방법 졸피뎀 구매방법 구매대행 졸피뎀 판매 졸피뎀 판매처 파는곳 졸피뎀 합니다 효과시간 졸피뎀 처방 부작용 졸피뎀 20mg 안아프게 죽는법 고통없이 안아프게 죽는방법 자살 하는법 고통없이 자살 하는방법 고통없이 죽는방법 고통없이 죽는법 고통없이 죽는법 고통없이 확실하게 죽는방법 고통없이 확실하게 죽는법 동반자살 자살 방법 자살방법 자살시도 자살약 구매 방법 자살세트 판매 구매 방법 자살 캡슐 슬기롭게 죽는 방법 슬기롭게 죽는법 슬픔 스트레스 외로움 힘들다 안아프게 목숨을 끊는 방법 안아프게 목숨을 끊는법 안아프게 자살 방법 안아프게 죽는 방법 안아프게 죽는법 안락사 약물 쉽게 죽는법 안락사 약물 자살 안락사 캡슐 쉽게 죽는 방법 안락사 캡슐 자살 방법 잠자면서 죽는 방법 조력 자살 방법 조력 자살 자살 캡슐 죽고싶다 죽고싶어 죽는방법 질소가스 연탄자살 편하게 가는 방법 편하게 죽는 방법 편하게 죽는법 편히 죽는 방법 편히 죽는법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포함된 물질(수면제, 농약 등)의 판매·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수면마취제 구매 약국   편히 죽는 방법

 22  2024-07-18 조회수 17 수정 지우기

수면마취제 구매 약국   편히 죽는 방법

수면마취제 구매 약국   편히 죽는 방법

수면마취제 구매 약국   편히 죽는 방법

안락사 약물 가이드  

⑤ 그 밖에 위에 준하여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정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분류로, 명백하게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2 자살유해정보 사례 및 대응 방안

① 자해 관련 정보

- **(정의)** 실제 죽음에 이르기 위한 자살 시도라기보다는 게시자의 극심한 스트레스 표출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 **(특징)** 청소년 사이에서 ‘인증’이라는 문화로 확산
 - ※ 단 자해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자살 실행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였거나, 출혈 과다 등 생명이 위급해 보이는 경우는 자살유발정보로 분류
- **(대응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 내용 검토하여 삭제

< 자해 관련 정보 사례 >

자해 관련 사진 정보



② 단순 우울 호소 및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 **(정의)** 자살이나 죽고 싶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삶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정보, 구체적인 자살 의지나 계획을 나타내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자살을 표현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조성 우려
- **(대응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 내용 검토하여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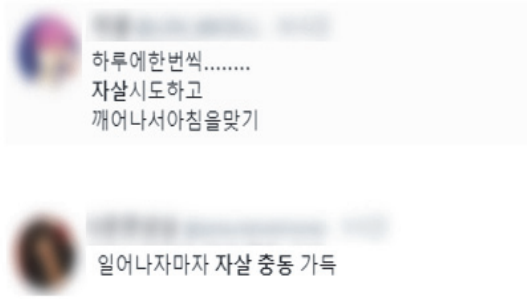
③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 **(정의)** 자살을 아름답고 숭고한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합리적인 해결 수단으로 표현하는 정보
- **(대응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 내용 검토하여 삭제

④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 **(정의)** 자살을 유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보로 희화적인 그림이나 사진, ‘자살각’, ‘자살마렵다’ 등으로 올린 게시물
- **(대응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 내용 검토하여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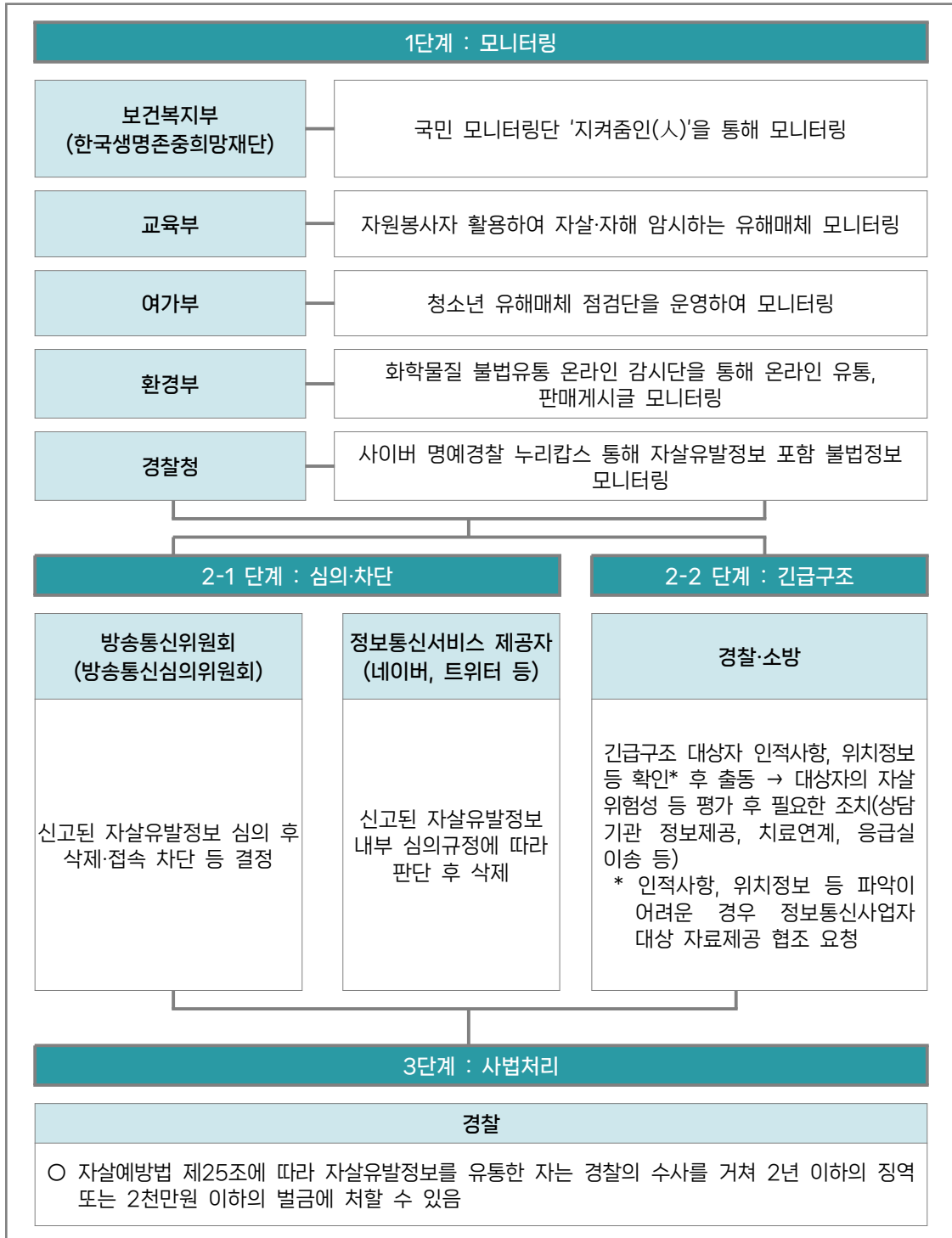
< 자살을 희화화하는 정보 사례 >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자살을 미화하는 정보
	

제4장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자살유발정보 대응 단계 및 방법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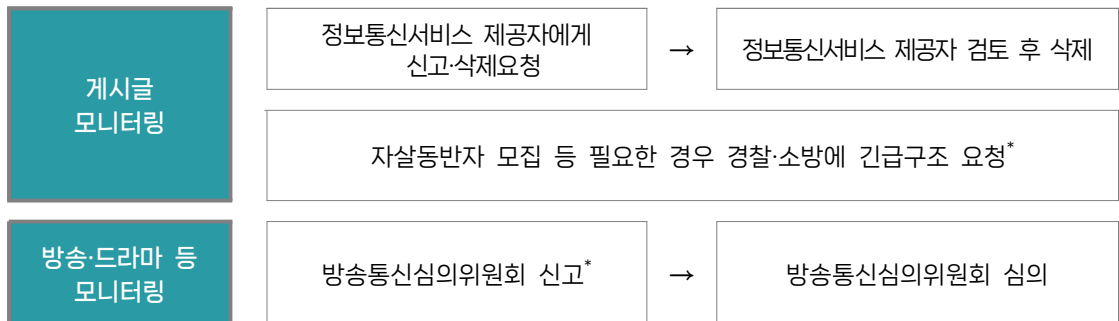
1 (1단계)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운영체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운영으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 자원봉사단, 활동자 수 897명 ('24년 12월 31일 기준)

< 자살유발정보 관리 체계도(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해당사항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

- (실적)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신고 건수	32,588	90,772	142,725	234,064	303,636	401,229
자살동반자 모집	4,478	19,424	3,920	18,889	12,860	22,902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742	44,919	74,186	6,070	4,602	4,086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2,707	17,540	50,430	41,210	21,899	23,071
기타 자살유발·유해정보	6,770	8,889	14,189	41,153	116,151	142,379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16,891	0**	0**	122,442	147,332	207,698
영상 콘텐츠*	-	-	-	4,300	792	1,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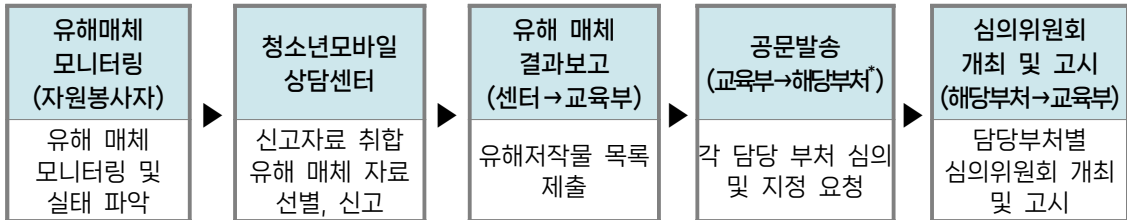
*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22년 신설

** 2020, 2021년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모니터링 건수는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에 포함됨

○ 교육부(학생 자살·자해 유발정보 및 유해매체 관리)

- (운영체계) 자살·자해를 암시하는 유해 매체물 모니터링* 및 신고·삭제 요청하여 학생·청소년 대상 접근 차단 추진

* (수행기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교육부 위탁)



* 여가부(음원, 음반), 간행물윤리위(출판물), 방통위(방송, 정보통신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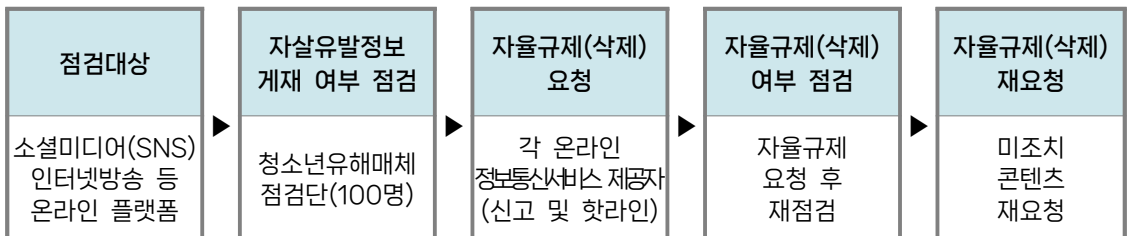
- (실적) 학생·청소년 대상 자해·자살을 조장하는 유해저작물 신고 조치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 건수	11	15	32	1,493	2,959

○ 여성가족부(청소년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 (운영체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24년 100명)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신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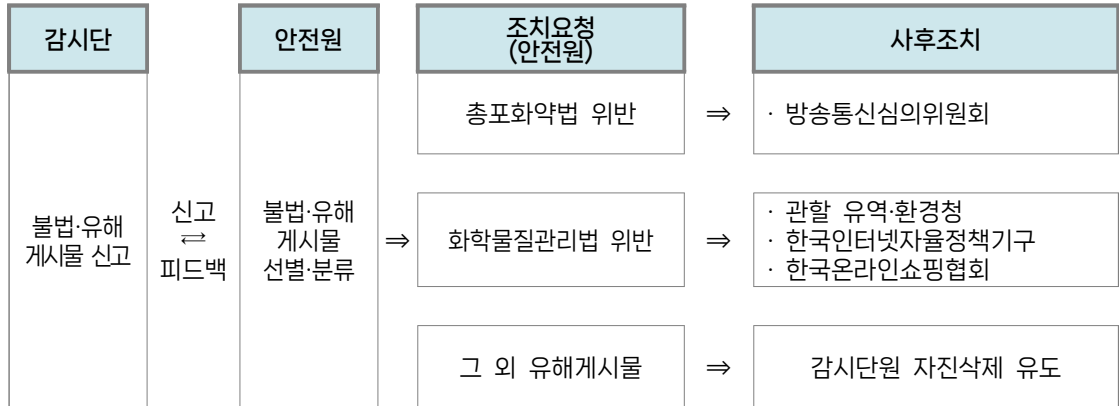
- (실적) 자살 유발정보 발견 시 해당 인터넷 사업자에 즉시 신고, 사업자별 내부기준에 따라 삭제 등 조치

(단위 : 건)

구분	2022	2023
조치 요청	2,817	2,454
조치 완료	1,874	1,430

○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유해 화학물질 관리)**

- (운영체계)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통해 온라인 유통, 판매 게시글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실적) 온라인 상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자살·범죄목적 판매·구매 등)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삭제요청 또는 자진 삭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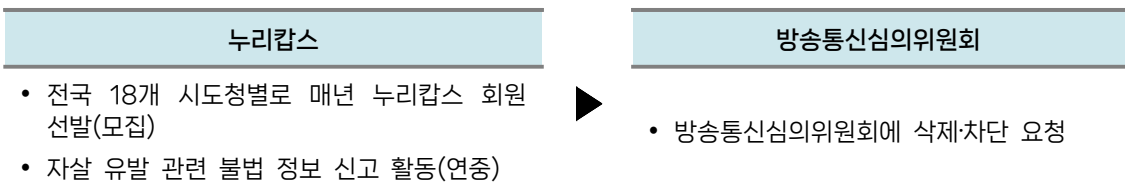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신고	의심	삭제
2024년	7,099	3,103	555

○ **경찰청(불법정보 관리)**

- (운영체계)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클리닝 및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발족한 누리캅스*를 활용,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체계 구축

* (누리캅스) 누리꾼의 '누리'+경찰의 'Cops'의 합성어로, '07년부터 운영중인 '명예 사이버 경찰'을 뜻함



- (실적) '자살 유발' 관련 불법 정보 신고 활동 연중 상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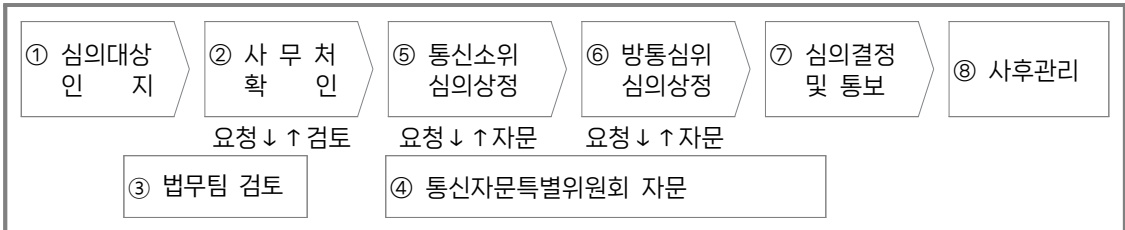
<연도별 자살유발정보 신고활동 내역>

연도	2022	2023	2024
건수	7,351	5,132	19,981

2 (2-1단계) 심의·차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차단

- (운영체계) 자살동반자 모집 및 구체적인 자살방법 묘사 정보 등 신고 건에 대해 인지 후 심의·결정



심의 절차	방 법	세부내용
① 심의대상 인지	모니터링	• 위원회 자체 인지
	신고접수	• 일반인 등 신고접수
	심의신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② 사무처 확인	위반유형별 분류	• 해당정보 확인 및 증거자료 보완 등
③ 법무팀 검토	안전검토	• 검토의견 제시
④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자문	안전검토 및 자문	• 위원회에 상정(심의절차 : ⑤~⑥번)된 안전에 대하여 각각의 해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안전 검토 및 자문을 요청(수시)
⑤~⑥ 위원회 상정	통신심의소위원회	• 자살유발정보 등에 대한 심의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소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⑦ 심의결정 및 통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시정요구결정 •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 •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의무 이행 및 변경 등 기타 필요한 결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해당없음 • 증거불충분, 위반내용 없음 등
	기타 관계 법률	기타 필요한 결정 • 관계기관 이첩·각하(타 기관 업무사항 등) • 심의중지(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
	공문발송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심의결정(시정요구 등) 통보
⑧ 사후관리	이의신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15일 이내)
	사후관리	• 시정요구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공문회신 • 시정요구 대상 사업자 시정요구 이행여부 확인(15일 이후)

- (실적)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살유발정보 심의 등 연도별 내역>

(단위 : 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심의	5,001	1,965	1,254	713	1,333	477*
시정 요구	2,347	771	725	713	1,046	466
해당없음	2,653	1,194	529	-	287	10
각하	1	-	-	-	-	-
기타 필요한 결정						1**

* 심의 전 삭제되어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

** 자율규제 강화권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심의·차단

- (운영체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및 내부기준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검토, 삭제

<사업자별 내부 삭제 기준>

트위터(X)	구글(유튜브 등)	페이스북(meta)
- 개인정보 게시 관련 위반 - 아동 성 착취물 - 폭력·혐오·증오·협박 행위 -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구매·거래 자해/자살 ※ 키워드 필터링의 경우 아동 성 관련 정보만 마련	- 과도한 노출 및 성적콘텐츠 - 아동 안전 자살, 자해, 섭식 장애 - 썸네일(성적 이미지, 피 또는 유혈장면, 폭력 이미지 포함)	[게시가 허용되지 않는 내용] 자살, 자해, 섭식 장애 - 성적인 콘텐츠 등 [만 19세 이상 공개, 민감한 콘텐츠 경고 화면 포함되는 내용] - 의료환경에서 안락사/조력을 통해 자살한 사람을 묘사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 치유된 흉터, 과거의 자해 묘사 콘텐츠
인스타그램(meta)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게시물 - 괴롭힘이나 공격적인 콘텐츠 - 성적 게시물 - 섭식장애, 자해 행위 등	- 불법성 게시물(사행성 정보, 자살 조장 등 생명 관련 범죄 정보, 기타 범법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 - 음란성 게시물 - 청소년 유해 게시물 -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 저작권침해 게시물 - 홍보성 게시물 - 비방·비하·욕설 게시물 등	- 제3자 비방 및 명예 훼손,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촬영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등을 유포하는 내용 - 범죄행위, 불법 유해정보 관련 등 ※ 우울증 갤러리(제재 강화) - 청소년 착취물, 성범죄, 자살 방조·동조, 약물 권유 등

3 (2-2단계) 긴급구조 - 경찰·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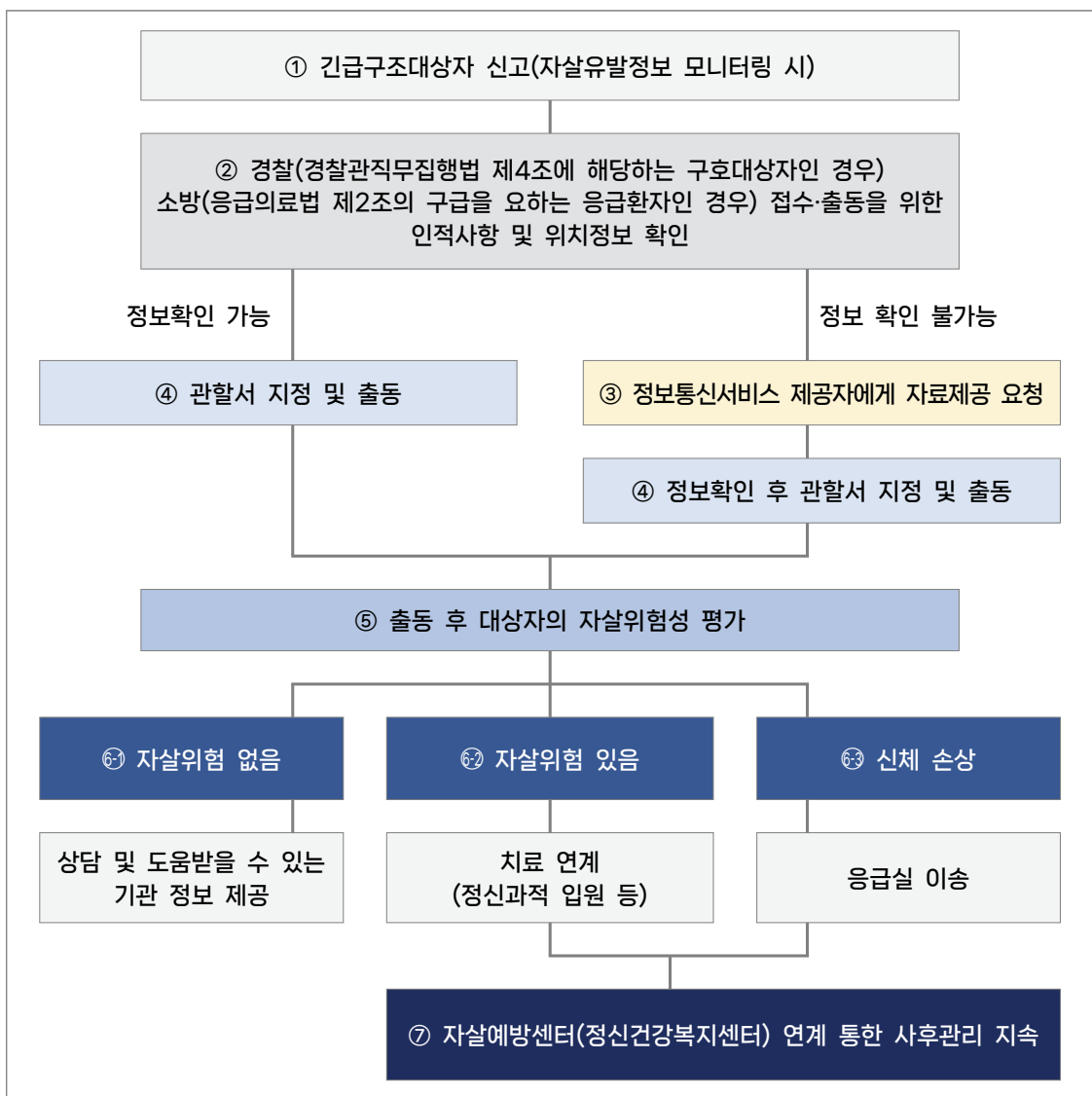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2018)참조

○ (운영체계)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중 긴급구조대상자 신고 시 경찰의 보호조치, 소방의 응급 이송 등을 위한 출동, 자살위험성 확인 후 필요 조치 이행

긴급구조 대상자의 정의(자살예방법 제19조의3)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긴급구조대상자 신고·접수 시 경찰·소방 대응체계>



- ① 긴급구조대상자로 신고되어 경찰·소방에 긴급구조 요청하는 경우, 자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현장에 동시 출동하여야 함
- ② 신고를 접수한 경찰·소방은 출동을 위해 긴급구조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위치정보 확인
- ③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살예방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적 정보, 위치정보 등 제공요청*
 - * (제공요청 대상 자료)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사전 지정 및 자료제공 협조
- ④ 정보 확인 후 관찰서 지정 및 출동
- ⑤ 출동 후 대상자 발견 시 자살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대상자의 자살 시도 여부, 자살위해물건 소지 여부, 계획의 구체성, 자·타해 위험성·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
- ⑥-1 자살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SNS상담 마들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 제공

자살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하였으나 자살에 대한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 ▶ 정신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신체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 일상생활을 충분히 영위하고 있는 경우
- ▶ 자·타해 위험이 전혀 없고 정신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 ▶ 자살계획에 대한 게시글을 업로드한 사실이 없는 경우(오인, 허위신고 등)

자살위험은 없지만 상담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 자살계획 게시글을 호기심이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업로드한 경우
- ▶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 가벼운 우울 증상을 보이거나 삶의 의욕이 없어보이는 경우
- ▶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 가족이 없거나 대인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 ▶ 직업이 없거나 최근 퇴사, 폐업, 가족 상실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⑥-2 대상자가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과적 입원 등 치료 연계, 자살위험 크지 않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과 협조)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 ▶ 발견 당시 목매, 투신, 약물 등 자살을 실행하려고 하였거나, 자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 ▶ 번개탄, 약물, 칼, 끈 등 자살수단으로 보이는 것이 주변에 발견된 경우
- ▶ 망각,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경우
- ▶ 반복적으로 죽는다는 말을 계속하는 경우
- ▶ 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 알코올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불가능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
- ▶ 고도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매우 의심되는 경우

- ⑥ 대상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신체손상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과 협조)

신체손상/자살의 경우

- ▶ 수면제나 농약과 같은 약물에 의한 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
- ▶ 신체(특히 손목)에 자상이 확인되는 경우
- ▶ 끈에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 ▶ 건물이나 교량 등에서 투신한 경우

- ⑦ 자살시도 하였거나 자살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정보 연계하여 치료비 지원·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자살시도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들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들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4 (3단계) 사법처리 - 경찰

○ (운영체계) '19. 7. 15.부터 시행된 「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행위 엄정 대응

- 경찰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검거 및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 판단
- ※ **【자살예방법 제25조 제3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단속 사례

- SNS에 'OO 고등학생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생의 자살 실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3회 게시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검거
- SNS에 '동반자살카페. 가치가실분 구합니다. 저는 OO입니다. 장난 사절이고 진실되게 가실 분만' 글을 게시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검거

- 자살 유발정보 유통자 단속과 함께 신속한 삭제·차단으로 대상자 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대처

제5장

부록

1 자살예방 관련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유해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시행 2024.7.12.>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7.11., 시행 2024.7.12.>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7.11., 시행 2024.7.1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 2024.7.12.>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시행 2024.7.12.>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7.11., 시행 2024.7.12.>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살유발·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유해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유해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

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유해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관련 조문 발췌)

-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관계부처 법령(관련 조문 발췌)

○ 교육부 - 학생 자해·자살 유발정보 유해매체 상시 모니터링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학생지원국) ⑥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7.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관리·지원
9. 학생 정신보건 관련 연구 지원
10.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1.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 영양기준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15.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6.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7.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9.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20.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1.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자살유발·유해정보 예방 홍보 및 확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살유발·유해정보 예방 홍보 및 확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⑪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시행
2.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4.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8. 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9. 정보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0.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1. 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대책의 수립·추진
13. 정보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1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17.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추진
2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관련 시범사업 추진
2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혁신서비스 발굴 및 확산
2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시민 역량 육성 지원

○ 여성가족부 - 청소년 유해물질 모니터링(자살유발·유해정보, 유해정보 차단)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항제11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제외한다)
- 7의2.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10.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

12.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6.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환경부 - 화학물질 불법유통 감시단 운영(자살을 목적으로 판매·유통되는 경우 차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의4(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환경보건국) ⑧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8.>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화학사고 표준·실무 매뉴얼 총괄·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관리

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관리**「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하"감시단")운영 및 불법유통 감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신고 등 처리) ①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제 폭발물 등 의심사례 게시물을 안전원에서 검토·분석한 후 유해정보로 판단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요청을 하여야한다.
2. 일반 포털사이트에 신고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에 삭제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3.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감시단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의심사례 사이트를 검토·분석한 결과, 테러·범죄행위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의 상세한 사항은 매년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감시단원에게 배포한다.

제13조(사고예방심사1과) ②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체계 구축
2.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 및 실적보고 관리
3.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및 관리 체계 구축
4.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운영

5.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관리

6.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전산·정보자원 운영·관리
7. 정보 보안관리
8.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감시 대상 정보) ○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 없는 정보게시
-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조장하는 정보게시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유통하는 정보게시

-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한 사제 폭발물·연막탄 등 폭발물 제조와 관련된 정보게시
- 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게시
- 폭발물 제조방법과 불법 화약류 등 재료 구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범죄행위를 일으키거나 방조하는 정보 게시

○ 경찰청 -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운영, 긴급구조대상자 구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사이버수사국) ①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수사기획과·사이버범죄수사과·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③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대응에 관한 연구·기획·집행·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 자살유발·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안내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자살유발 · 유해정보 모니터링	한국 생명존중 희망재단	미디어협력팀	02-3706-0431~4	https://sims.kfsp.or.kr/
	경찰청	민원	182	https://minwon.police.go.kr/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051-662-3000	https://www.kyci.or.kr/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043-830-4000	https://nics.me.go.kr/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민원	1377 02-3219-5114	https://www.kocsc.or.kr/
긴급구조 기관	경찰청		112	https://www.police.go.kr/
	소방청		119	https://www.nfa.go.kr/
	해양경찰청		112	https://www.kcg.go.kr/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과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마들랜	자살예방 SNS상담 www.129.go.kr/etc/madlan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
	교육부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	1661-5004	'다들어줄게' 문자
	여성가족부		1388	청소년 고민상담
	국방부		1303	국방헬프콜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발행연월: 2025. 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기획·편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미디어협력팀
(media@kfsp.or.kr)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

